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
2. 공고기간 : 2022. 9. 30. ~ 2022. 10. 14.(14일간)
3. 공고대상자

성명	생년월일	주소	공고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공고사유
김*욱	2005.09.08	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2길 48 104동 803호	2022.9.30.	2022.10.01. ~2023.09.30.	보관기간경과
김*정	2005.09.20	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0길 29-14 3동 403호	2022.9.30.	2022.10.01. ~2023.09.30.	수취인불명
양*아	2005.09.26	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-20 103동 302호	2022.9.30.	2022.10.01. ~2023.09.30.	보관기간경과

4. 신청장소 : 실거주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

5. 발급안내

-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
-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발급한(사진이 부착된)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및 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1장(3.5cm x 4.5cm)을 제출,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-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·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,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가능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(담당: 강영미 ☎ 330-8115)

2022년 9월 30일

서대문구 연희동장

